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24

발의연월일: 2020. 7. 28.

발 의 자: 김수흥・김윤덕・고용진

김진표 · 박재호 · 허 영

이용선 · 안규백 · 전용기

이동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명확한법률관계, 공정한 과세 및 국민의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국세기본법 상 '경정 등의 청구 지연처리 시 통지', '국세행정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협조' 및 '명단 공개'관련 규정의 미비 및 명확성 부족으로 인하여 원활한 국세행정의 집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가 현장 확인 및 서류제출 지연 등의 문제로 2개월 이내에 통지가 곤란할 경우 납세자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국세행정을 위한 자료요청으로 명확히 하며, 명단공개대상 중 조세범 처벌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공범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의 명확화와

국세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45조의2제3항, 제84조 제1항·제2항 및 제85조의5제1항제3호). 법률 제 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3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자에게 관련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84조의 제목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를 "(국세행정을 위한 과세자료 요청 등에 대한 협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조를"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조"를 "과세자료의 제공 등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협조"로 한다.

제85조의5제1항제3호 중 "자로서"를 "자(「형법」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공범을 포함한다)로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③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	
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	
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	
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다만</u> ,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을 통
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	지하여야 하며
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	
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① 기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 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 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u>협조</u>하 여야 한다.

③ (생 략)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 1조의13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국세행정을 위한 과세자
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① -
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②
과세자료의
제공 등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
<u>여 협조</u>
③ (현행과 같음)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u>.</u>

- 1. 2. (생 략)
-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 항,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 (이하 "조세포탈범"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포탈세액 등

자(「형법」제30조부터	제34
조까지 공범을 포함한다	·)로서

4. (생 략) ② ~ ⑥ (생 략) 4.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